

2025년도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북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상북도지사,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①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혁신, 성공사업화, 투자유치 등 분야별 종합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 확립
- 총사업비: 9억원(경상북도)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1차년도)
- 지원기업 모집
 - (공고기간) 2024. 12. 30.(월) ~ 2025. 1. 17.(금)
 - (접수기간) 2025. 1. 2.(목) ~ 2025. 1. 17.(금) 18:00시까지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건①)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¹⁾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 단, 경상북도에 지방세를 납입하는 기업에 한함

- (조건②) 2023년 기준 매출액 10억 이상의 기업

※ 단, 봉화영양·청송·울릉 지역 소재 기업은 매출액 기준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조건③) 인구감소지역에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 (조건④)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④ 최근 연도 결산(2023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⑤ 최근 연도 결산(2023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3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별 최대 5,000만원 패키지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30억원 연계(기업별 최대 5억원 연계)

1)

경북 인구소멸지역 현황(15개 시·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 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역량을 키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투자 패키지 지원」 추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기업이 원하는 지원 선택 가능
- (자금연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연계 지원 ☞ 기업 당 최대 5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금리 2.5%(변동)로 지원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지원 프로그램

- 아래 프로그램 중 원하는 프로그램 최대 5개까지(지원금 5,000만원 이내) 지원신청 가능(최소 2개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개수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5,000만원) 신청 가능
- 기업부담금 : 부가세를 포함한 총 지원금액의 10%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지원금
기술 혁신	①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최대 5천만원 (부가세 포함)
	②	인증획득	
	③	특허출원	
성공 사업화	④	디자인 마케팅	
	⑤	컨설팅	
	⑥	전시회	
투자	⑦	투자컨설팅	
	⑧	IR 자료제작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수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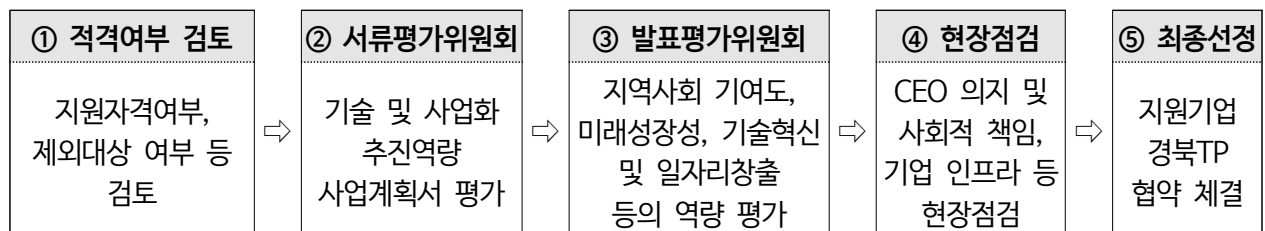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5. 1. 2.(목) ~ 2025. 1. 17.(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gbtp.or.kr/>)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메인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검색
- (제출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붙임서식 참조
- (중요) 제출서류 목록(① ~ ⑫)순서로 1개의 pdf로 만들어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①	참여기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2	필수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첨부1	필수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2	필수
④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⑤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경상북도 자치구에 의해 징수된 내역에 대한 증명서만 인정)	-	필수
⑦	'23년 매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법인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	필수
⑧	'23년 수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수출액 수출 업력)	-	해당 시
⑨	'23년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등)	-	필수
⑩	(우대가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	해당 시
⑪	(우대가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	해당 시
⑫	(우대가점)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	해당 시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상기일정 및 추진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서류평가위원회) 기업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대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평가, 최종 선정 기업의 3배수 정도 1차 선정, 역량있는 기업이 많을 시 3배수 이상 선정 가능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역량 (50)	경영·기술현황	15점
	추진체계 및 수행역량	15점
	목표 및 추진내용	20점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15점
	경제(기대)성과	15점
고용 (기대)효과 (10)		10점
자금편성 (10)		10점
합 계		100점

※ 상기 평가지표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평가위원회) 본 사업을 통한 개발기술(또는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능력, 미래 성장성, 일자리 창출 역량 등 종합적인 기업가치 평가

평가지표		배점
기술혁신성		20점
기업 성장성		30점
경영역량		20점
지역발전 기여도 (30)	지역경제 기여	15점
	인구증대 기여	15점
합 계		100점

※ 상기 평가지표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2점)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 공고일(24.12.30.) 기준 유효기간 해당한 경우에 한함	1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 공고일(24.12.30.) 기준 유효기간 해당한 경우에 한함	1점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 공고일(24.12.30.) 기준 유효기간 해당한 경우에 한함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1점

※ 상기 우대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

- (현장점검) 발표평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을 통한 적격심사 및 최종 지원여부 판단, 수혜기업 선정

5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1	신청서 접수	~ 2025년 1월 17일(금)	
2	적격여부 검토 및 서류평가위원회 개최	2025년 1월 4주차	
3	서류평가 결과 통보	~ 2025년 2월 7일(금)	기업 개별 통보
4	발표평가위원회 개최	2025년 2월 3주차	
5	발표평가 결과 통보	~ 2025년 2월 26일(수)	기업 개별 통보
6	현장점검	2025년 3월 중	기업과 일정조율
7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2025년 3월 중	
8	사업 수행	~ 2025년 11월 30일(일)	
9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지급	2025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전략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박세정 전임연구원	053-819-3044	sjpark417@gbtp.or.kr
길하나 선임연구원	053-819-3043	itutugil@gbtp.or.kr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430억원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6. ~ 자금소진시까지)
- 2차 : 30억* (4. 7. ~ 자금소진시까지)
- *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업 대상
- 3차 : 200억 (7. 7.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을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 (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지원 제외 기업

-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용자대상에 포함)
-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 용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하는 경우는 예외)
-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환수

- 용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용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II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5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평일기준)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 지원범위

구 분	지원범위
시 설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본점사업장 이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공사, 냉장·냉동창고 공사,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 제출서류

공통 서류

- ▶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 기타 용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자금용도별 서류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⑤
 -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택1)
-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 공장매입비 :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확인 자료
-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 증·개축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 ▶ ESG경영 시설비 :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III 용자승인 및 사후관리

㉠ 용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 외국산 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 용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용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지원항목		대출금 지급대상	유의사항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부지 매도인	
	건축비	시공업체	
	기계설비 ESG 경영 시설	납품(제작)업체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의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 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융자금 상황

융자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사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피해규모</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3천만원 이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5천만원 이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1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유예기간</td> <td>3개월</td> <td>6개월</td> <td>1년</td> </tr> </tbody> </table>	피해규모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피해규모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없이 신청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 점검주기 : 연 1회
 - 용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